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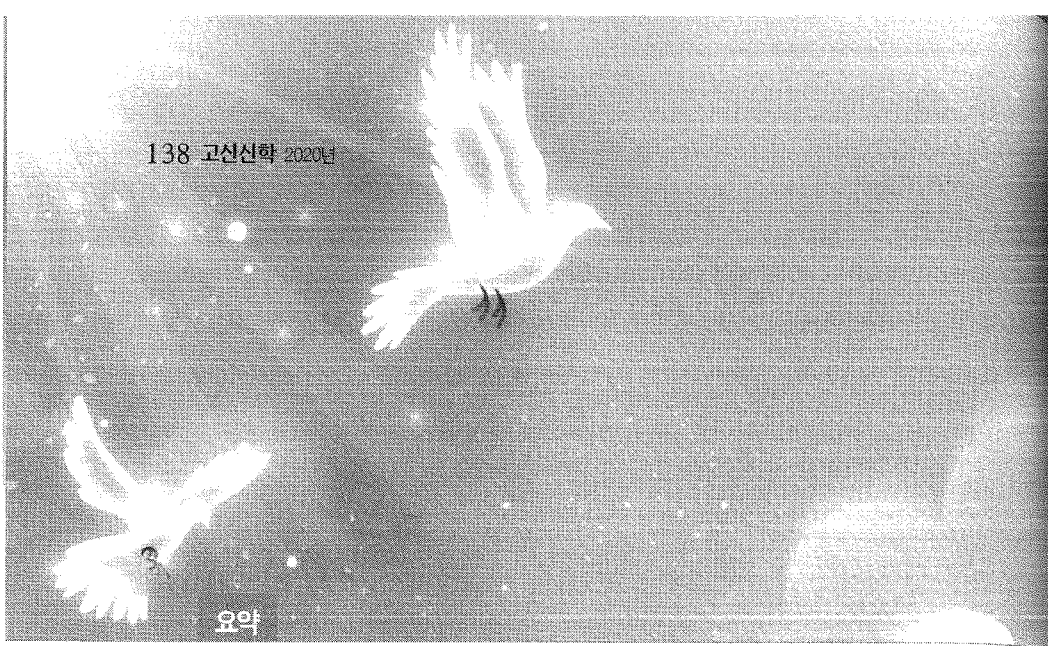
국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츠빙글리의 이해  
Zwingli's Understanding of the State and the Poor

이신열

고신대(신학과 교수)

목차

- I. 시작하면서 | 143
- II. 국가의 기원과 기능 | 145
  - 1. 국가의 기원 | 145
  - 2. 국가의 기능 | 148
- III.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 | 155
- IV. 자선 (almsgiving)과 구호 (poor relief) | 164
  - 1. 자선 | 164
  - 2. 구호 | 167
- V. 국가와 구호활동 | 170
  - 1. 1520년의 〈자선법 (Alms Statute of 1520)〉 | 171
  - 2. 1525년의 〈구호법 (The Poor Law of 1525)〉 | 173
  - 3. 츠빙글리의 기여 | 176
- VI. 마치면서 | 180



요약

## 국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츠빙글리의 이해

국가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츠빙글리의 견해는 그의 종교개혁 정신을 지배하는 말씀 중심의 신학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국가는 인간의 부패에서 비롯되는 인간 삶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 권력기관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이 권력을 행사하되 이 기능도 궁극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된다.

가난한 자에 대한 츠빙글리의 이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 형제이자 공동체의 일원,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이 돌봄과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에 셋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짓' 형상인 우상과는 전혀 다른 '참된' 형상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표현에 해당된다. 둘째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토대로 일치와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필수적 구성 요소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자선과 구호행위에 대한 츠빙글리의 신학적 견해는 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이유로 후자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표면화된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나타나는 기부행위에 대한 집중화, 평신도화, 합리화라는 세 가지 흐름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호행위를 선호하는 츠빙글리의 견해는 개별적 자선이 공적이며 국가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구호로 바뀌었다는 학자들의 견해(맥키)와도 일치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리히 시 의회가 제정한 <자선법 (1520)>과 <구호법 (1525)>를 통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구호 활동에 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츠빙글리의 신학적 견해가 완벽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의 개혁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후에 <구호법>에도 여전히 개인의 개별적 자선행위를 용인하는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Zwingli's Understanding of the State and the Poor

## 주요어

츠빙글리 (Huldrych Zwingli), 국가, 취리히 (Zürich),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 자선, 구호

## Abstract

### Zwingli's Understanding of the State and the Poor

Prof. Dr. Samuel Y. Lee

Zwingli's understanding of the state and the poor are formulated by his theology centered on the Word of God, which is the centerpiece of his spirit of the Reformation. First of all, the state arises out of human depravity resulting on conflict and split in human life. The state has various functions in controlling aforementioned problems. It seems Zwingli's concept regarding the function of the state ultimately depends on his theological view.

Regarding the poor, Zwingli's understanding can be summarized into following: the living image of God, brother and member of the community, and the true image of God. The first expression implies a generalized concept the poor should be taken care by all. The last emphasizes the fact that idols are false image of God, while the poor true. The second expression is provided, knowing the effort of Zürich,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to pursue the community in unity and peace should recognize the poor are the necessary and vital constituency.

In his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almsgiving and poor relief,

Zwingli heavily denounces the first and thus favors the latter. A general evaluation of act of the poor relief after the Reformation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oncepts: centralization, laicization, and rationalization. Zwingli's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poor relief instead of the almsgiving can be understood in this broader context analyzed by many scholars including McKee.

Finally,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city council of Zürich engaged in the relief activity for the poor in detail in the realm of two laws enacted in 1520 and 1525, respectively: Alms Statute & Poor Law. In these two laws,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theological views of Zwingli are perfectly reflected in them. In the Poor Law of 1525, there are still remains encouraging individual almsgiving due to gap in the poor relief activity allowed in this law.

**Keywords** | Huldrych Zwingli, the state, Zürich, the poor, the image of God, almsgiving, poor relief

## I. 시작하면서

올해 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COVID 19)는 우리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지원금의 원래 취지는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엄청난 팬데믹(pandemic) 현상을 경험하면서 온 세계는 질병과의 전쟁 뿐 아니라 가난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경제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견해를 표방했는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우리 신학계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1)</sup> 종교개혁 연구가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복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았다고 간주한다. 바빙크 (Herman Bavinck)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사회의 중요성을 가장 깊이 인식한 종교개혁자로 츠빙글리 (Huldrych Zwingli, 1484-1531)를 들었다.<sup>2)</sup> 츠빙글리의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은 가난을 신학의 중요한 모티브

- 1) 루터, 츠빙글리, 칼빈, 불링거, 그리고 베자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의 흑사병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도서출판 다함, 2020), 126-89.
- 2) Herman Bavinck, *De ethiek van Ulrich Zwingli* (Kampen: G. Ph. Zaalman, 1880), 122. 우병훈, “츠빙글리의 성화론: 그의 신문, 교회론, 국가론과 연결하여,” 『한국개혁신

로 삼게 만들었다고 한스 솔(Hans Scholl)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인간 영혼의 상황과 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 그러므로 종교개혁적 목회는 구빈사업에 제일 중점을 둔다. 종교개혁적 신학은 가난의 신학이며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적 신학이 아니다.”<sup>3)</sup>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해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가에 관한 견해를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사고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 츠빙글리에 관한 많은 연구물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국가와 가난한 자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본 논문은 국가의 기원과 기능, 가난에 대한 이해, 자선과 구호, 국가와 빈민 구호라는 소단락을 설정하여 츠빙글리의 견해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의 메시지를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학」 64 (2019): 174.

- 3) 한스 솔, 『종교개혁과 정치』, 황정욱 옮김 (서울: 기독교문사, 1993), 95.  
 4) 최근 국내 츠빙글리 연구는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조용석, “츠빙글리와 하나님 중심주의(Theozentrik): 신성의 보존을 위한 교의학적 기획,” 『신학논단』 65 (2011): 233-53; “츠빙글리와 교회: 사회적 영역으로의 통합,” 『신학사상』 156 (2012): 153-80; 정미현, “이미지와 성상 부정에 대한 츠빙글리 사상 다시 보기,” 『한국조직신학논총』 43 (2015): 143-78; “츠빙글리의 신인식론,” 『한국조직신학논총』 48 (2017): 123-62; 이신열, “츠빙글리의 신론,” 『종교개혁과 하나님』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8), 45-83; 안인섭,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3-1531)의 사회윤리사상,” 『신학지남』 86/4 (2019): 165-91; “박찬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츠빙글리의 견해,” 『한국개혁신학』 65 (2020): 80-117.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로는 다음의 단행본을 들 수 있다. Lee Palmer Wendel, *Always Among Us: Images of the Poor in Zwingli's Zuric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 II. 국가의 기원과 기능

### 1. 국가의 기원

먼저 츠빙글리는 참된 성도에게는 국가 권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기독교인이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일을 받지 않는다.”<sup>5)</sup> 국가로부터 미신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츠빙글리의 이런 주장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주장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16세기 재세례파들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6)</sup>

그렇다면 츠빙글리는 나중에 왜 국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종교 개혁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인정하게 되었는가? 그는 국가의 기원과 필요성을 인간의 죄악에서 찾는다.<sup>7)</sup> 타락은 인간에게 이기심을 제공했고 그 결과 그는 자기에(Selbstliebe, Self-love)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는 곧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며 대적하는 삶을 의미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하여 (1523)><sup>8)</sup>라는 글에서 이렇게

- 5) Huldreich Zwingli, *Huldreich Zwinglis Werke*, hrsg. Melchior Schuler & Johannes Schulthess, Band III (Zürich: Friedrich Schulthess, 1832), 400: “Christianus, qui vere Christianus est, magistratu non habet opus.” (Elenchus contra catabaptistas) 이하 HZW로 약칭함.  
 6) Alfred Famer, *Die Lehre von Kirche und Staat bei Zwingli*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19), 32.  
 7) Jakob Kreutzer, *Zwinglis Lehre von der Obrigkeit* (Stuttgart: Ferdinand Enke, 1909), 7.  
 8) 이 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2차 자료는 다음과 같다. Heinrich Schmid, *Zwinglis Lehre von der göttlichen und menschlichen Gerechtigkeit* (Zürich: Zwingli Verlag, 1959). 또한 이 글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정미현,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츠빙글리 윤리의 현대적 적용,” 『기독교사회윤리』 31 (2015): 217-49; 최영재, “츠빙글리의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에 관하여,” 『장신논단』 49 (2017):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서 인간의 삶에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평화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쟁을 막고 해결할 통치자와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에게서 사람의 정의가 사라진다면 우리 사람 사회는 다른 아닌 비이성적 동물 세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 그래서 재판관과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 따라서 그들의 정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sup>9)</sup>

인간의 범죄는 츠빙글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 (göttlich gerechtigkeit)와 대조될 뿐 아니라 이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인간의 의 (menschlich gerechtigkeit)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국가 권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츠빙글리는 인간의 의를 자연법 (lex naturae)과 동일시했으며 이 자연법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 국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sup>10)</sup>

115-42.

- 9) HZWI, 437: "... dann söllichs brächt unruw und zwytracht; ja zerstorete den gantzen menschlichen fryden und bywonung. Darumb hat er obre und richter verordnet, die uneinung verhortind und zertrügind mit dem, dass sy eim ieden gäbind, das im gehorte. ... Denn sölle uns die arme gerechtigkeit erst ouch entgon, wie uns die göttlich entgangen ist; so wäre menschlich gsellschaft nüt anders dann ein leben der unvermünftigen thieren: ... Darum sind die richter und obren diener gottes, ... und wer irer gerechtigkeit nit gehorsam ist, der thut ouch wider gott: ..." (한글번역, 홀트라이히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임걸 옮김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220-21).
- 10) Kreuzer, *Zwinglis Lehre von der Obrigkeit*, 9-10. 츠빙글리의 국가에 대한 이해가 자연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파너 (Alfred Farnier)에 의해 제기되었다. Farnier, *Die Lehre von Kirche und Staat bei Zwingli*, 33-34. 파너는 츠빙글리는 국가가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자연법이란 무엇인가? 그는 자연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 자연의 법칙을 "네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sup>11)</sup>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연법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간에 의해 제정된 법에 의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본다면,<sup>12)</sup> 인간의 의는 정의라고 말할 가치도 없으며 어디까지나 가련하고 불완전한 (arme bresthafte)의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츠빙글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한다. 율법은 두 종류의 율법, 즉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는 외적인 인간을 목표로 삼는다.<sup>14)</sup> 인간적인 율법은 불완전한 인간의 의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의 내면적 죄를 처벌하지 못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난 죄인, 즉 사회적 법을 위반한 사람은 인간의 의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죄인이므로 국가 권력에 넘겨져서 처벌되어야 한다.<sup>15)</sup>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unmittelbar) 주어졌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개신교 전통에서 자연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칼 바르트 (Karl Barth)의 신명론 (divine command ethics)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회복을 주장하는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Stephen J. Grabill, *Rediscovering the Natural Law in Reformed Theological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6), 특히 3-11을 참고할 것.

- 11) HZWI, 440: "Das gesatz der natur ist: Das du willst dir beschehen, das thu eim andren ouch! und widrum; das du dir nit willst beschehen, thu ouch nieman! ... Darum zielt Christus das gesatz der natur miet disen worten: Du sollt den nächsten als lieb haben als dich selbs!"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26).
- 12) 그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략한 고찰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이신열, "츠빙글리의 신론," 60-63.
- 13) HZWI, 436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18).
- 14) HZWI, 435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16-17).
- 15) HZWI, 436: "An der menschlichen gerechtigkeit werdend wir oft fromm erfunden, wie wol wir gottschelmen warlich sind. Welichter aber an der menschlichen gerechtigkeit

## 2. 국가의 기능

크로이처 (Jakob Kreutzer)는 츠빙글리의 국가 기능에 이해에 종교적 성격이, 슈미트 (Heinrich Schmid)는 종교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16)</sup>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관하여>에서 츠빙글리는 국가의 기능 또는 과제를 10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8가지는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는 “바울의 말로”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sup>17)</sup> 또한 이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서 신학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한다. 이 10가지 기능은 그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으므로 사실상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 사회의 질서 유지를 들 수 있다. 국가의 권력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이들의 악행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

erfunden wirt also, dass er iez zu dem, dass er ein gottschelm, ouch ein wüssentlicher schelm ist, der wirt iez dem ze teil, der die übertretenden verurteilt, dem gwalt oder dem richter.”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18).

16) Kreutzer, *Zwinglis Lehre von der Obrigkeit*, 28; Schmid, *Zwinglis Lehre von der göttlichen und menschlichen Gerechtigkeit*, 221-33. 츠빙글리의 국가 이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고찰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obert C. Walton, *Zwingli's Theocracy*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67).

17)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세 번째 경우인데 그 내용은 국가 권력의 과제를 명시적으로 “죄 없는 사람들과 수많은 힘없는 대중, 곧 과부와 고아 그리고 힘없이 억눌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HZWI*, 448.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42).

18) *HZWI*, 447: “Die obern sind nit ein schrecken oder forcht güter werden, sunder der bösen. ... Dass aber die obren nit ein schrecken oder forcht güter werken synd, müss ie da har kummen, dass syn wüssind, weliches güte werk sijgind, welchs böse. Wo wellend sij das erlernen anderst weder in dem wort gottes? darin findend sij die unbetroglichen warheit. Darum ghein leer bas zu eim regiment und oberkeit dient

이렇게 악행을 억제하는 국가의 기능은 사회에 안전을 제공하는 차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두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참된 경건을 가르치기에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작용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리저리 더듬거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율법의 굴레로 인하여 제재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종의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면 서부터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sup>19)</sup>

이와 관련하여 츠빙글리에게 국가의 기능은 복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up>20)</sup> 여기에 취리히의 종교개혁자가 이해한 국가의 기능이 지닌 기본적 성격이 종교적인 이유가 드러난다.

츠빙글리는 국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어떤 행동이 선하며 어떤 행동이 악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세 신성로마제국의 경우처럼, 국가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주장하는 전통에 두게 되었을 때, 국가 권력은 방탕한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이 전통에 의해 악용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1)</sup> 츠빙글리는 그 결과 이 권력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들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했는데 이는 선한 행동을 처벌하는 행위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였다.<sup>22)</sup>

denn die leer Christi: denn die leeret, was güet, was böse sye, ...”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40-41).

19)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2.7.10-11.

20) Schmid, *Zwinglis Lehre von der göttlichen und menschlichen Gerechtigkeit*, 228-30.

21) 그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박찬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츠빙글리의 견해,” 『한국개혁신학』 65 (2020): 80-117.

22) *HZWI*, 447-48.

둘째,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원래 츠빙글리는 개인이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솔은 이런 츠빙글리의 자세를 루터보다 더 과격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sup>23)</sup> 루터는 인간은 자신이 지닌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sup>24)</sup> 츠빙글리는 이에 대해서 모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이를 공동체의 소유로 보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어진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재산을 불의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우리 사람은 단지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sup>25)</sup>

사유재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취리히의 종교개혁자는

- 23) 솔, 『종교개혁과 정치』, 106: “츠빙글리는 여기서 보다 과격하게 사고한다. 하나님의 의는 소유를 폐기하며 또한 소유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의 빛에서 소유 문제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공동 소유다 (Omnia sunt communia).”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 이런 공동소유의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강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유재산이란 하나님의 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는 이해한다. HZWI, 390; 츠빙글리,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1524)”, 『츠빙글리 저작선집 1』, 415.
- 24) 루터의 소유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Gottfried W. Locher, “Luther: Die Heilsgewissheit des Christen und sein Eigentum,” in idem, *Der Eigentumsbegriff als Problem der evangelischen Theologie* (Zürich: Zwingli Verlag, 1962), 21-28.
- 25) HZWI, 453: “Darum Christus die rychtag billich ungrecht nemnt, zu eim teil, dass wir eigen machend, dass gottes ist; zum andren, dass wir, das gottes ist, darüber er aber uns schaffner syn, nit noch sinem willen bruchend.”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51), 솔, 『종교개혁과 정치』, 107에서 재인용.

재산이 보호받아야한다는 취지로 빚진 자들은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6)</sup> 그의 이런 주장은 당시에 농민들과 재세례파들이 내세웠던 혁명적 경향을 부인하고 국가 권력의 존재와 기능을 정당화하는 그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sup>27)</sup> 츠빙글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록 우리가 원래부터 부패하지 않았었다라도 개인 소유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거저 준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사유재산이 있는 곳에서 폭동이나 불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심성이 타락된 것을 보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사회에서 사유재산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sup>28)</sup>

셋째, 국가 권력은 모든 사람들을 이 권력에 순종하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시행한다.<sup>29)</sup> 국가가 하나님의 의를 시행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츠빙글리는 국가는 불의를

26) HZWI, 451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46-47).

27) 솔, 『종교개혁과 정치』, 107.

28) HZWI, 451: “Darum nun alle ding sind in eigenschaft kummen, so lernend wir alle, dass wir sündler sind; und ob wir von natur nit wüst wärend, so wäre doch die eigenschaft ein grosse sünd genug, darum uns gott verdammte: denn, das er uns fry gibt, das machend wir eigen. ... Darum nun us der eigenschaft nit unruw oder übels kömmt, gebüt gott uf unseren bresten: du solt niemand gut begeren ! Sie siehend wir wol, dass diss gebot erst uf die eigenschaft muss kummen syn.”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47).

29) HZWI, 445: “... alle menschen der oberkeit söllind gehorsam syn: dann alle oberkeit sye von gott.”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36).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그리고 츠빙글리는 국가가 이 권력을 강제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한계를 설정했다. 여기에서 ‘한계’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종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츠빙글리는 중세 후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폭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간섭했고, 미사가 희생제물이라는 가르침을 모든 사제들에게 강요했던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다.<sup>31)</sup> 츠빙글리는 이런 이유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순교 정신을 아울러 주장했다.

만약 어떤 제후가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느니 오히려 그 즉시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그 어떤 권력기관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력이 하나님 말씀과 맞선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 권력을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sup>32)</sup>

30) HZWI, 449.

31) HZWI, 446.

32) HZWI, 446-47: “Sobald nun die fürsten gebietend, das wider die göttlichen warheit stryrt, oder dieselben verbüt: so söllend, die dem wort gottes glouben gebend, ee den tod erlyden, ... Darum soll sich darwider ghein oberkeit legen, oder es wirt sy zerknisten.”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38-39).

넷째, 츠빙글리는 국가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다.<sup>33)</sup> 여기에서 좋은 일이란 사실상 옳은 일을 가리키므로 그의 주장은 국가가 인간적 의를 증진시키는 훈육관 (schulmeister)과 같은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sup>34)</sup>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가 죄없는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 그리고 힘없이 억눌린 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다.<sup>35)</sup> 츠빙글리는 국가 권력이 정의를 행하는 자를 칭찬한다는 맥락에서 정의의 시행 대상자인 억눌린 자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1520년에 취리히 시 정부는 자선법 (Alms Statute of 1520)을 시행했는데 이는 빈민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일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1525년에 마련된 빈민구호법 (Ordnung unnd Satzung die armen und das almuosen betraeffende)<sup>37)</sup>에 근거하여 빈민구호를 총괄하는 행정부서인 구빈원(alms office)을 두게 되었다.<sup>38)</sup>

다섯째,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공복들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sup>39)</sup> 츠빙글리는 국가의 녹을 받는 공복들을 하나님의 종(diener gottes)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의 일이 곧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이므로 국가는 마땅히 이들의 생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츠빙글리는 당시에

33) HZWI, 449: “... die oberhand ein diener gottes ist dir zu guttem: ...”

34) HZWI, 436.

35) HZWI, 448: “Denn ie so ghört dem gwalt zu, dass er die unschuldigen beschirme und die blöden schar der witwen, waisen und underdruckten. Haj. I. 17.”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242).

36) 당시 독일어로 작성된 이 법의 원문은 다음에 실려 있다. Emil Egli, *Aktensammlung zur Geschichte der Zürcher Reformation in den Jahren 1519-1533* (Zürich: 1879; reprint Aalen, 1973) [EAK], no. 132], 이하 EAK로 약칭함. Wendel, *Always Among Us*, 179-87에도 원문이 실려 있다.

37) EAK, no. 619, Wendel, *Always Among Us*, 188-95.

38) 취리히의 구빈원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Wendel, *Always Among Us*, 163-64.

39) HZWI, 450-51.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네 가지를 언급한다: 거래세, 십일조세, 그리고 소작료 (이자)와 고리세 (Wacher). 이 4가지 가운데 십일조세에 대해서 가장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십일조세를 가리킨다. 이 십일조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소유로서 그가 매매하는 십일조 징수권을 지칭하는데 츠빙글리는 당대에 시행되었던 이 세금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국가가 십일조세를 요구하는 한, 모든 사람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공권력은 또한 그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은 위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권력이 명령하는 대로 십일조세를 내어야 합니다. 공권력의 의무는 십일조세가 오용되지 않도록 지키는데 놓여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도 그 공권력의 의무입니다.<sup>40)</sup>

츠빙글리는 이렇게 한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십일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공권력에서 찾았지만, 그는 국가가 공통적 인간관계와 정의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세금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40) HZWI, 452: “So long aber söllich mit geschicht, soll ein ieder den zehenden geben, wie die oberhand heisset, und gheiner für sich selbs üzid gewaltiglich fürnemen, oder hierby der oberhand eigentlich ufzesehen, dass die zehenden nit misbrucht werdind; und wo das beschähe, dass sy dasselb bessre.” (한글 번역, 저자). 십일조세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에서 발견된다. HZWI III, 385-89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407-14).

왜냐하면 십일조세는 ‘일시적’ 재화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도 국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III.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

웬델 (Lee Palmer Wendel)은 취리히의 종교개혁자가 주장하는 가난한 자를 다음의 세 가지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 형제이자 공동체의 일원,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형상.<sup>41)</sup>

첫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living) 형상이다.<sup>42)</sup> 여기에서 ‘살아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형상 앞에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가난한 자들이 돌봄과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츠빙글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자 임무라고 <목자 (Der hirt, 1524)><sup>43)</sup>에

41) Wendel, *Always Among Us*, 42-77.

42) Cf 루터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살아있는 거룩한 제단’(Heiligtum, sacred altar)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Martin Luther, WA 10 III, 334, 23-24 (“Sermon von den Heiltumen”, 1522): “... der armen ist da, da lebt gotts wort in, ... ist das lebendige hayltumb; ...” Wendel, *Always Among Us*, 40, 각주 17에서 이를 살아있는 형상(living image)으로 번역했는데 의미상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부정확한 번역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Heiligtum’이란 단어가 지닌 주된 뉘앙스는 ‘거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43) 이 글은 제 2차 토론회 마지막 날인 1523년 10월 28일 주교 공의회에서 행해진 설교인데 친구이자 이 토론회의 의장이었던 요아힘 바디안 (Joachim Vadian, 1484-1551)과 인쇄업자이자 친구인 크리스토퍼 프로샤우어 (Christoph Froschauer, 1490-1564)의 요청에 의해서 1524년 3월 26일에 작성되었다. 이 글에 대한 2차 자료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Paul Wernle, *Der evangelische Glaube nach den Hauptschriften der Reformatoren, II. Zwingli*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19), 116-31; 이은선, “츠빙글리의 『목자』에 나타난 목회윤리,” 강경림 외, 『한

서 밝힌 바 있다. 이 작품의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라는 단락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상급을 바라면서 드리는 미사를 가장 싫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와 돌로 된 성인의 우상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크리스찬들 가운데 수많은 게으름뱅이들, 사제들, 수사들, 그리고 수녀들이 존재하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입니다. ... 벽에 적용되는 것들은 가난 때문에 주어진 아름다움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될 불쌍한 딸들과 부인들의 경건함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sup>44)</sup>

<목자>에 드러난 종교개혁의 성격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이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에 집중할 뿐 아니라, 증거된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된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대한 집중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신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솔이 올바르게 지적한 대로 츠빙글리는 복음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면적인 차원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효력을

권으로 읽는 츠빙글리의 신학』(서울: 세움북스, 2019), 55-77.

44) HZWI, 658: “Wenn sy aber wüsstind, dass gott das verlonet messhalten so übel gefallt; und dass man die lebenden bilder gottes, di armen christen, nit die hölzinen und steinien götzen zü der eer gottes bekleiden soll; und das ... dass es so schädlich ist under dem christenen volk so vil müssiggänger, pffaffen, münchen, nonnen halten: ... so an die muren verwendet wirt, zu bewarung der frommkeit armer tochtren und frowen, dero schöne durch armut in gefärd gefurt, usgenben wirt.” (한글 번역, 저자), Wendel, *Always Among Us*, 43 & Timothy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TN: Broadman, 1988), 136에서 재인용.

지녀야 한다고 선언했던 것이다.<sup>45)</sup> 콘스탄츠 (Konstanz)의 암브로지우스 블라레르 (Ambrosius Blarer)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츠빙글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내적일 뿐 아니라 또한 외적(regnum Christi etiam externum)이었다.<sup>46)</sup>

이런 이유에서 츠빙글리는 <목자>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사랑의 정신을 저버리고, 이기심과 물질적 욕심에 사로잡혀 행했던 잘못된 행위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들의 행위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행위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빼앗는 행위였다고 지적한다.<sup>47)</sup>

따라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주장은 목자들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목회적 또는 신학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대목에 해당된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을 내버려두는”<sup>48)</sup> 목자는 거짓 목자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을 무시하고 이를 저버리는 목자이다. 왜냐하면 거짓 목자들이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버려두는 것은 곧 이들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된다. 츠빙글리는 이들이 목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늑대 (wolf)라고 비판한다.

45) 솔, 『종교개혁과 정치』, 104.

46) Hans Rudolf Lavater, “Regnum Christi etiam externum: Huldrych Zwinglis Brief vom Mai 1528 an Ambrosius Blarer in Konstanz”, *Zwingliana* 15/5 (2010): 338-81. 솔, 『종교개혁과 정치』, 104.

47) 이 내용은 그의 다른 작품인 <67개 논제에 대한 해설 (Auslegen und Gründ der Schlussreden, 1523)>의 제 33조에 언급되기도 한다. HZWI, 344.

48) HZWI, 663: “Welche der armen nit acthend, sy verdrucken lassend und beschweren, sind falsch hirten.” (한글 번역, 필자)

2.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늑대입니다.
3.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교황권과 관계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이 누리는 조작된 높은 직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쓴 하나님을 모욕하는 늑대입니다.
4.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더라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통치자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폭정을 방조하는 사제들은 아부하는 늑대 또는 백성들의 배신자입니다.<sup>49)</sup>

둘째, 가난한 자들은 형제요 공동체의 일원 (member)이다.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 (1524)>는 츠빙글리의 대표적 사회비판문서로서 루터의 사회비판문서인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과 <고리 대금에 대한 설교>를 연상시키는 글이다.<sup>50)</sup> 이 글에서 츠빙글리는 가난이 개인적이며 사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적이며 공동체적인 이슈라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에서는 반항적인 농민들과 종교적, 그리고

49) HZWI, 663: "II. Welche denn schin leerend, und nit das wort gottes, sunder jer tröum leerend, sind aber wolf.

III. Welche das wort gottes leerend, doch nit zu der eer gottes, sunder uf sich udn jr haupt, den papst, zu schirm jns erdichten hohen stands zihend, sind schädlich wolf kummend in den kleideren der schaften.

IV. Welche schon leerend, und leerend ouch nit dem wort gottes, und aber due grössen verärger, die höupter, nit anrend, sunder jr tyranny wachsen lassend, sind schmeichlend wolf oder verräter des volks." (한글 번역,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353).

W. P. Stephens, *The Theology of Huldrych Zwingli* (Oxford: Clarendon, 1980), 276.

50) 페터 빈첼러,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해설>,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385.

세속적 권력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유재산의 인정에 근거한 공정한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했다. 츠빙글리는 국가가 제정한 세금 제도가 시민들에 의해서 준수되어야 하며, 토지 사용에 대한 이자는 마땅히 지불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츠빙글리는 국가가 시행하는 십일조세와 이자 제도가 지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이 지닌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제도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해서>의 후속 작품에 해당하는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에서는 일치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츠빙글리는 농민들과 재세례파들이 십일조와 이자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이의 폐기를 원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교회와 국가 정부의 권력이 이 이슈에 대해서 농민들과 정반대의 견해를 표방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토지의 소유주인 영주들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자제도를 포기할 의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츠빙글리는 농민들의 주장과 영주들의 주장을 절충적으로 수용하여 광범위한 민족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에서 그가 제안한 과감한 내용에 해당된다. 그는 이 글의 셋째 부분에서 교황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이자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행해졌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십일조세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먼저 이자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어느 누구도 새로운 이자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자를 줄이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자면, 새로운 이자 제도의 고안이나 도입 대신에 이의 축소와 점진적 철폐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척 심하게 오용되

었던 십일조세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가 요구한 것은 십일조세의 폐지가 아니라 이의 개혁(verbesserung)이었다.<sup>51)</sup> 중세 교회의 십일조세는 일종의 상품 또는 개인자산으로 간주되었는데 이 십일조 징수권을 구매할 사람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수확물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의 경우와는 달리 십일조세에 발생한 손실금은 매출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sup>52)</sup> 이런 이유에서 이자와 달리 십일조에 대해서는 약간 유연한 입장이 채택될 수 있었다. 즉 츠빙글리는 교회 법률규정에 명시된 십일조세가 원래 일종의 수익세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부금 (Corpus Iuris Canonici, 66장 XVI, 질문 1)의 취지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53)</sup> 물론 교회에서 징수된 십일조가 은행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가는 위험이 방지된다면, 십일조는 먼저 사제들이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적절한 경제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츠빙글리의 주장이었다.<sup>54)</sup>

이렇게 될 때, 즉 교황제도가 폐지될 뿐 아니라, 이자제도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오용된 십일조세가 개혁된다면, 가난한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공동체가 성립될 수 있다고 츠빙글리는 믿었다. 이것이 그가 꿈꾸었던 형제애에 근거한 공동체, 즉 서로 협력하고 일치와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는가>에서 재세레파의 비생산적이며 무정부적인 태도에 맞서서 취리히의 모든 시민들이 형제처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하나되는 공동체로서 비전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55)</sup>

51) HZW II.1, 416.

52) 빈첼러, “각주”, 8,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508.

53) HZW II.1, 386.

54) HZW II.1, 417ff.

55) 빈첼러,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해설”, 386.

셋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참된’ (true) 형상이다. 츠빙글리는 <형상과 미사에 관한 논제 (A Proposition Concerning Images and the Mass, 1524)>에서 다음과 같이 참된 형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것이 신적 사역임을 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이것들과 같이 우상들의 장식에 주어진 물건들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sup>56)</sup>

<형상과 미사에 관한 논제>에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다면, <발렌틴 콤파르에 대한 답변 (Ein antwort, Valentin Compar gegeben, 1525)>에서 이 주제가 더욱 집중적으로 고찰된다. 먼저 이 글은 복음, 교리, 형상, 그리고 발렌틴 콤파르가 연옥을 변호함이라는 4가지 주제를 항목 (article)별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 항목인 ‘형상’에 집중하고자 한다.<sup>57)</sup> 세 번째 항목은 전체적으로 대중들이 우상 숭배라는 잘못에 빠진 사실을 다루면서 왜 형상이 거부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곧 사람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츠빙글리는 다음과 같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급한다.

셋째로 우리는 그것들[형상들]을 은과 금으로 치장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형상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을 사람의 형상에 걸어둔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의 형상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sup>58)</sup>

56) Huldrych Zwingli, *Zwinglis sämtliche Werke*, hg. Emil Egli, Georg Finsler und Walther Köhler, Band III (Leipzig: Heinsiu, 1914), 130: “Welchs wir wold wüssend ein göttlich werck sin; denn hinfür die guoter, so an sölche zier der götzen gelegt, an die armen, die ein ware bildnus gottes sind, ob gott wil, verwendet werdend.” “Vorschlag wegen der Bilder und der Messe,” (CR 90). 이하 ZSW로 약칭함. Wendel, *Always Among Us*, 59에서 재인용.

57) HZW II.1, 20-59.

58) HZW II.1, 33-34: “Zum dritten legend wir kosten an sy mit silber und gold. ... Welcher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이미 암브로시우스 (Ambrosius), 크리소스토무스 (Chrysostomus),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Gregorius of Nazianzus)에 의해서 사용되었다.<sup>59)</sup> 위 인용문에서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교회에 속한 형상들을 치장하는데 사용되었던 재화들을 교회가 되돌려 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언급되지 않는다. 개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은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형상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헛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했던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 형상은 ‘잘못된’ (false) 형상에 해당된다. 츠빙글리는 인간이 만든 우상은 결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무엇인가? 츠빙글리는 <67개 논제에 대한 해설 (1523)> 제 30조에서 수도원에서 행해지는 가난에 대한 서원 (votum)을 우상숭배로 정죄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으로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가난을 하나님으로 칭송하면서 가난을 서원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을 가난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60)</sup> 즉 우상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아니라 거짓된 형상이라는 것이 츠빙글리의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우상화된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 받은 가난한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된다. 가난한 자들은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되었다.

aber wir den dürftigen bilden gotte, den armen menschen, geben solltind, so henkend wirs and des menschen bildnuss; denn die götzen sind bildnussen des menschenm, aber der menschen ist ein bildnuss gottes. Wendel, *Always Among Us*, 61에서 재인용.  
59) Wendel, *Always Among Us*, 62. 웬델은 바젤 (Basel)의 종교개혁자 외콜람파디우스 (Oecolampadius)가 그의 설교집 (*De amandis pau//peribus*)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고 밝힌다.

60) *HZWI*, 331. 주도홍, 『처음 시작하는 루터와 츠빙글리: 팩트를 따라 여행하는 종교개혁의 두 거장 이야기』 (서울: 세움북스, 2019), 217: “츠빙글리는 가난으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가난 서원을 우상숭배로 정죄한다. 알고 보면 재물이 그들에게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 구체적 표현이 <발렌틴 콤파르에 대한 답변>에서 문자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로마 가톨릭의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예를 들면, 츠빙글리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상숭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이를 시행했던 것을 여러 곳에서 비판하는데 예를 한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많이 다루고자 한다. 나는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보호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당신의 모든 후원이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이들은 백해무익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쓰레기로서, 올바른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sup>61)</sup>

그러나 이런 우상숭배의 행위는 반드시 배격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비가시적이므로 그는 형상화되지 않으신다. 둘째, 하나님을 사람과 짐승으로 형상화하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벌하신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들이 더 이상 우상숭배에 대한 후원이라는 비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 행위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마땅할

61) *HZWII*, 45: “Sich, so vil hab ich mussen harfür bringen, damit ich denen, die götzen under dem namen der bilden berschirmend, offenlich anziegte, dass all jrer schirm nütts denn ein erdachter, unnützer, ja schädlicher menschn tand ist, der in gottes wort nit grund hat, und den rechten waren glouben nit weiss.” 츠빙글리의 우상숭배 부정 및 배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Carlos M. N. Eire, *Against the Idols: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6), 73-86; 정미현, “이미지와 성상 부정에 대한 츠빙글리의 사상 다시 보기,” 『한국조직신학논총』 43 (2015): 151-62; 이은선, “츠빙글리의 예술 이해: 성상파괴와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3 (2019): 175-93.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 사용되었던 재정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형상들은] 은이나 금으로 완전히 칠해지거나 또는 금과 보석으로 꾸며져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그렇다. 우상의 모든 후원자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굵고, 얼어붙게 방치해 두었으나, 그들 자신의 형상들은 아주 비싼 값을 들여서 치장했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sup>62)</sup>

## IV. 자선 (almsgiving)과 구호 (poor relief)

### 1. 자선

자선에 대해서 츠빙글리는 <발렌틴 콤파르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복음”에서 이를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자선을 베푸는 것은 아무런 의심의 여지없이 선행이다. 그러나 이를 베푸는 자들이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가? 우리는 항상 최고의 부분을 지켜낸다. ...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의 선을 위해서만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달리 악마와 지옥,

62) *HZWII.1*, 56: “Sy habend müssen vergüldet syn oder gar silbrin oder guldin oder mit gold und edelgestein bekleidet, das man alles sollt den armen anghenkt haben. Ja, alle götzenbuwer werdend gott ouch rechnung müssen geben, dass sy jm sine bilder habend lassen hungren, früren; und habend jre eignen götzen so tür gezieret.” Wandel, *Always Among Us*, 63에서 재인용.

또는 폭군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선을 베푼다.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나 영원한 것을 사기 위해서, 또는 인간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베풀지 아니한다.<sup>63)</sup>

위 인용문에 나타난 츠빙글리의 자선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선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수평적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수직적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왜 츠빙글리는 이런 부정적 견해를 지니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중세의 자선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엘시 맥키 (Elsie McKee) 교수는 중세의 자선 행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항상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의무로 이해되었다고 보았다.<sup>64)</sup> 여기에서 종교적 의무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무르고 있는 망자들을 구원해 낸다는 차원에서 의무에 해당된다.<sup>65)</sup>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선이 지닌 수직적 행위에 대한 왜곡이

63) *HZWII.1*, 10: “Byspil; Almosen geben ist ein allerungezwifletestes guts werk; welcher gibt es aber one vorteil? Wer behaltend uns allweg den besten teil. ... Und gibt nieman frölich allein zu gottes eer und gutem des nächsten, sunder us forcht des tüfels und der höllen, oder gottes als eines tyrannen, oder das zytlich oder ewig ze erkoufen, oder us üppiger eer, dass man nit könne reden, wir gebind nütts.” Wandel, *Always Among Us*, 60에서 재인용. 예일대학교의 가톨릭 신학 교수인 게리 앤더슨 (Gary Anderson)은 이 행위에 수평적인 차원과 수직적인 차원이 교차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전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차원을 가리키며, 후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맥락에서 주어지는 행위로서 이는 하나님께 대역 (loan)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Gary W. Anderson, *Charity: The Place of the Poor in the Biblical Tradition* (New Haven/London: Yale Univ. Press, 2013), 105.

64) 엘시 N. 맥키, 『개혁교회전통과 디아코니아』, 류태선·정병준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90-91.

65) Anderson, *Charity*, 162-81; 맥키, 『개혁교회전통과 디아코니아』, 97-98: “그러면 사람들은 왜 제일 먼저 자선재단을 설립하였는가? 왜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부하였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개신교도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평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츠빙글리는 자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해서 (*De vera et falsa religionis*, 1525)><sup>66</sup>에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자선행위를 통해 인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주장을 ‘허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그는 자선행위가 부정에 기울기 쉽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6가지 이유에서 설명한 후에 (아래 인용문에서는 생략됨) 결론적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자선행위는 포도농꾼들이 치명적인 병의 위험을 받듯이 아주 많은 위조와 사칭의 위험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 요약. 그 자체가 의심의 여지없는 이 자신의 선행은 이토록 많은 잘못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기에 누구도 올바르게 행하게 될 것을 바랄 수 없다. 그 누가 최고로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주겠는가? 그 누가 자신이 베푸는 자로 여겨지도록 하며 또는 자기가 아무 것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없이 베풀겠는가?<sup>67</sup>

는가? 그것은 전통적인 구제행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영혼의 구원, 즉 기부자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기부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수혜자의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습은 최종적인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수혜자들의 가난은 그들의 가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66)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박찬호, “츠빙글리의 개혁신학: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해“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27 (2017): 346-77; 조용석,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 대한 주해,” 강경림 외, 『한 권으로 읽는 츠빙글리의 신학』 (서울: 세움북스, 2019), 127-45.

67) *HWZ III*, 182-83: “*Eleemosyna tot mala possunt accidere, quae ipsam vitient, quot vineis morbi, quin eas perdunt, accidunt. ... Breviter tot imminent vitia huic tam indubitatio operi, ut neminem operandum sit id ipsum digne posse efficere. Quis enim non sic*

츠빙글리는 자선이 인간 안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중세 교회의 주장에 맞서서 이런 방식으로 자선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더 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너는 더 작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잘못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sup>68</sup>

## 2. 구호

그렇다면 구호행위는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츠빙글리의 자선 행위, 특히 개별적 기독교인들이 베푸는 행위가 지닌 부정적 요인, 특히 신학적 요인에 대해서 예리한 분석을 제공했던 츠빙글리는 구호행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자선 행위에는 베풀을 제공하는 개별적 후원자(benefactor)와 그가 제공하는 구호 물품을 받게 되는 거지와 같은 수혜자(beneficiary) 사이에 직접적인 교환(exchange)이 발생한다. 이 행위는 개인적이며 개별적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수혜자는 채무자(debtor)로 간주되는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던 것이다.<sup>69</sup> 츠빙글리가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에서 자선에 대해서 거의 논하지 않고, 십일조세의 올바른 사용과 이자 제도의 폐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일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제시했던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dat, ut potiora sibi servet? quis non dat, ut aut videatur dedisse, aut non videatur non dedisse etc.”

68) *HWZ III*, 483: “*Sic omnia quae facimus, percurte, et non minora, imo maiora videbis in quaedam incidere vitia.*”

69) Wendel, *Always Among Us*, 48.



자선 행위에 드러난 이런 부정적 차원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 행위의 실천 방식에 대한 변화를 동반하였는데 이 변화는 곧 자선 대신에 구호행위가 선호되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맥키는 이 변화를 조직적이며 행정적인 차원에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자선행위의 집중화 (centralization), 평신도화 (laicization), 그리고 합리화 (rationalization).<sup>70)</sup>

첫째, 집중화는 여러 개인들이나 단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재단들과 기관들을 하나 또는 서너 개의 재원이나 공동자금으로의 통합을 뜻한다. 여기에서 병원은 일반적으로 구호활동을 위한 행정본부로 작용하였으므로 공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필수기관이자 안식처로 활용되었다.

둘째, 평신도화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공동자금이 교회의 사제들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관리자들은 교회의 평신도이자 집사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권력보다는 국가 권력의 지휘를 받고, 시민의 권력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되었다.<sup>71)</sup>

고대 교회 전통에서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교회 수입의 25%를 할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sup>72)</sup> 중세 교회, 특히 중세 후기 교회에서

는 교회의 성직자들이 극도로 부패 타락한 나머지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여, 자신들이 섬겨야 할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엄청난 만행에 젖어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교회 내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재정들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고 이는 상당한 재정적 낭비를 초래했다. 이런 와중에 중세 후기의 자선단체들, 특히 교회와 수도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선단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sup>73)</sup> 이런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전이 이루어졌던 것은 도시의 권한과 경제적 능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부유한 상인들이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로 인해 평신도들이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기부하는 일 또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sup>74)</sup>

셋째, 합리화는 구호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 관리자와 가난한 자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구호 업무 전담자를 구분하여 이 행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뜻한다. 취리히에서는 1523년 9월 29일에 수사 신부들 (canons)과 시의회가 공동으로 개혁을 단행했으며,<sup>75)</sup> 이듬해인 1524년 12월에 탁발수도회의 건물이 시의회로 넘겨졌다.<sup>76)</sup> 1525년 1월 5일 시 의회는 이 재산을 관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업무에 4명의 의원들을 임명했는데 이들 가운데 한스 라바터 (Hans Rudolph Lavater)와 울리히 트링클러 (Ulrich Trinkler)는 츠빙글리의 친구들이었다.<sup>77)</sup> 이들에게는 수도원

그의 가족들, 그리고 나그네 접대를 위하여 2) 성직자를 위하여 3)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4) 교회 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73) 중세 후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Brian Tierney, *Medieval Poor Law: A Sketch of Canonical Theory and Its Application in England* (Berkeley, CA/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59), 67-135.

74) 맥키, 『개혁교회전통과 디아코니아』, 92.

75) Wendel, *Always Among Us*, 137-38.

76) Wendel, *Always Among Us*, 140; 울리히 개블러, 『쯔빙글리: 그의 생애와 사역』, 박종숙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111. 개블러에 의하면 수도원들은 병원과 복지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재산들은 복지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츠빙글리의 주장에 의한 것이었다.

70) 맥키, 『개혁교회전통과 디아코니아』, 93-95.

71) 16세기 제네바의 경우, 시의회 (city council)의 한 기관에 해당하는 시 병원(General Hospital)은 목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들로 구성된 시의회의 한 위원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위탁자들은 다시 병원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프로큐라토르(the procurator)와 병원에 매일 근무하면서 일상적 운영의 책임을 지고 가난한 자들을 현장에서 돌보는 오스피탈러(the hospitaler)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은 또한 제네바 교회의 집사들이기도 했다. 로버트 킹던, 『칼빈의 집사직분 이해』, 이신열 옮김, 『칼빈과 사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0), 140ff.

72)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4.7. 그레고리우스 (Gregorius)에 의하면 교회 수입은 다음의 4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고수되었다: 1) 감독과

재산 관리와 구호, 그리고 외국인들을 내어 쫓는 일을 포함하여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1월 9일에는 4명의 다른 위원들이 추가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수도원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수도원의 보석과 장신구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또한 이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어왔던 사제들의 제의복(chasubles)과 장백의(albs) 등을 찾아내었는데 이 옷들은 판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 주어졌다. 그 결과 취리히에서 많은 가난한 자들이 사제 복장을 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기이한 현상<sup>77)</sup>이 전개되기도 했다.<sup>78)</sup> 이런 방식으로 취리히의 구호활동은 이에 필요한 재산(수도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호전담자로 세분화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 활동이 더욱 합리화되었으며 전문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V. 국가와 구호활동

이 단락에서는 국가의 구호활동을 살펴보고 그 범위를 취리히 시 의회가 제정한 두 가지 법인 <자선법>과 <구호법>으로 제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520년에 제정된 <자선법>의 의도는 자선 행위 자체를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법은 어떤 사람들이 자선의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 <구호법>은 이와 달리 국가, 시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할

77) Wendel, *Always Among Us*, 142-44. 라바터는 유리세공업자이었는데 나중에 취리히의 시장으로 선출되었던 인물로서 츠빙글리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78) Wendel, *Always Among Us*, 142-43.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 1. 1520년의 <자선법 (Alms Statute of 1520)>

취리히는 가난한 자들의 구호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시의회는 1520년 9월 8일에 <자선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이 법의 기본 취지로서 자선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제공되는데 이 단락에서 가난한 자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

첫째, 자발적으로 가난에 처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낭비와 사치, 그리고 도박에 빠지며 불필요한 일에 자산을 탕진할 뿐 아니라 일하기에 적합하지도 또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가난의 비참함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밝힌다. 둘째는, 첫째와는 반대로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로써 자신들과 자신들에게 속한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낭비와 사치가 아니라, 화재, 전쟁, 가뭄, 그리고 다양한 질병 등으로 나타나는 신적 시험, 불운과 제도에 의해서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된 자들이다.

<자선법>의 둘째 부분은 어떤 종류의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이 제외되어야 하는가를 다룬다.<sup>79)</sup> 취리히 시 의회는 기부자들과 수혜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맥락에서 가난한 자들을 분류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제공한 셈이었다.<sup>80)</sup> 이렇게 기부의 대상에서 제외된 가난한 자들은 13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언급된다. 예를 들면, 외적 행위에 있어서 문제를 지닌 자들로서 거리, 수도원 등에서 공적으로 구걸 행위에 임한 자들, 다른 사람의 자녀나 부인을 유혹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자들, 자신의 소유를

79) Wendel, *Always Among Us*, 182-83.

80) Wendel, *Always Among Us*, 129.

과도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낭비한 자들, 성실하게 일하기를 거부한 자들, 결혼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결혼의 서약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등이 언급된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합이 있는 자들로서 주기도문, 천사의 인사, 성모송 (Hail Mary)<sup>81)</sup>, 십계명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암송하지 못하는 자들, 주일 설교, 미사, 저녁 기도회를 경청하지 않는 자들,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자들, 부활절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교회에서 출교되었으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해벌을 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또는 성인들에 대해서 정구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저주하거나 맹세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 서로 간에 거짓말하거나 악담하여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을 조장하는 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부분에는 어떤 종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선의 대상이 되는가를 다룬다.<sup>82)</sup> 이들은 명예롭고 중용적인 자들로서 돈을 요구하거나 마을의 여러 가옥들을 돌면서 구걸하는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들은 또한 애굽에서 지냈던 요셉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요약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이다. <자선법>이 명시한 자선의 대상에 포함된 자들은 이런 경건한 자들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정리된다. 이 리스트는 앞서 언급된 자선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리스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다. 명예와 수치심을 지닌 자,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열망을 지닌 자, 그리고 구걸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진 자.<sup>83)</sup>

81) 라틴어로 Ave Maria에 해당된다. 거룩한 성녀 마리아를 찬양하는 기도로서 16세기 이후부터 이 기도는 마리아의 중재 (intercession)을 바라는 문구로 마무리되었다.

82) Wendel, *Always Among Us*, 183-87.

83) Wendel, *Always Among Us*, 185.

## 2. 1525년의 <구호법 (The Poor Law of 1525)>

1525년 1월 15일에 시의회에 발의된 이 법의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일체의 구걸 행위를 제거하는 것,<sup>84)</sup>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방법, 그리고 이 돌봄에 필요한 재원 마련.<sup>85)</sup> 앞서 언급된 <자선법>이 자선 행위의 정의와 이 행위의 수혜자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구호법>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모든 종류의 구호 행위들 (음식물과 구호물품 제공, 거주지 제공, 병원의 환자들을 돌보는 활동 등)을 총괄하는 ‘시립’ 구호기관의 설립을 다루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구호 행위에 대한 ‘집중화(centralization)’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취리히 시의회에 의한’ 집중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교회나 민간단체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왔던 구호 활동들에 대해서 세속정부가 이를 일원화하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취리히의 종교개혁자가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는가>에서 자선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놓인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시의회는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특정한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런 옷을 입은 자들에게만 음식과 질병 치료가 제공되었다.<sup>86)</sup>

<구호법>은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sup>87)</sup> 구호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88)</sup> 스트라스부르 (Strassbourg)와 누렘베르크

84) 개블러, 『쯔빙글리』, 111.

85) Wendel, *Always Among Us*, 188-95.

86) 개블러, 『쯔빙글리』, 111.

87)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다음을 참고할 것. Wendel, *Always Among Us*, 146-62.

88) Alice Denzler, “Geschichte des Armenwesens in Kanton Zürich im 16. und 17. Jahrhundert,” *Zürcher volkswirtschaftliche Studien*, N. F., 7 (1920): 30. 덴츨러에 의하면 취리히의 <구호법>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호활동의 토대로서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Nuremberg)와 같은 유럽의 도시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sup>89)</sup> 먼저 제 2항은 누가 구호활동의 책임을 맡는가를 명시한다. 구호관(Pfleger)들은 모두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돌프 슈톨 (M. Rudolp Stoll), 외르크 쾰드리 (J. Jörg Göldli), 울리히 트링클러 (Ulrich Trinkler), 그리고 한스 슈네이베르거 (Hans Schneeberger). 또한 이들을 총괄하는 의장이자 서기(scribe)가 지명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인리히 브렌발트 (H. Heinrich Brennwald)이었다.<sup>90)</sup> 제 2항에 근거해서 모든 구호활동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제 3항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서약은 구호관들이 단순히 사적 차원의 구호 행위에 임하는 자가 아니라 시의회 소속 의원들로서 시민들의 도덕적 정체성을 돌보는 공적 직무에 임명된 자임을 동시에 가리킨다.<sup>91)</sup>

제 4항은 지역 감독관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가를 다룬다.<sup>92)</sup> 지역 감독관들은 모두 7개로 나누어진 권역들을 돌보는 자들로서 권역 당 1명의 정직한 사제와 1명의 경건한 평신도 도우미로서 구성된다.<sup>93)</sup> 시의회가 사제를 지역 감독관들로서 인정했다는 것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가난한 자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호관들이 가난한 자들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지역 사제와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자선법

(1520)>에 기록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검증 기준이 철저하게 신앙적 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되새겨 준다.

사제와 평신도는 일주일에 1회 가난한 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누가 자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이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취리히 시민이 아닌 자를 걸러내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구호프로그램이 세속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구호 행위가 취리히의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제 7, 8항은 취리히 시민이 아닌 타 지역인들과 외국인들은 구호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시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밝힌다.<sup>94)</sup> 구호가 제공되는 대상은 취리히의 시민들이었고, 특히 취리히에서 거주지가 확인된 자들 (hussarmen, home poor)로 제한되었다. 제 9항은 이렇게 구호의 대상으로 확정된 자들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특정한 문양을 지닌 옷을 입어야 했다.<sup>95)</sup> 제 10, 11항은 취리히 시에서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제 12항은 설교자가 가난한 자들의 존재를 때때로 교회에 알려서 이들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선함 (alms chest)을 설치하라고 밝힌다.<sup>96)</sup> 제 17항은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외텐바하 (Oetenach)의 도미니칸(Dominican) 수도원에는 의사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밝힌다.<sup>97)</sup>

89) Otto Wickelmann, "Über die ältesten Armenordnungen der Reformationszeit (1522-1525)," *Historische Vierteljahrschrift* 17 (1914-15), 187-228, 361-400.

90) Wendel, *Always Among Us*, 188. 이 구호감독관 4명의 명단은 앞서 1525년 1월 5일에 시의회에 의해 임명되었던 4명의 명단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3명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1명은 다른 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월 5일에 임명된 명단에는 라바터가 포함된 반면에, <구호법>에는 라바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슈네이베르거가 언급되어 있다.

91) Wendel, *Always Among Us*, 148.

92) Wendel, *Always Among Us*, 189-90.

93) 페터 오피츠, 『울리히 츠빙글리: 개혁교회의 예언자, 이단자, 선구자』, 정미현 역 (서울: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7), 76.

94) 니콜라스 스미어 (Nicolas Smiar)에 의하면 1525년부터 1529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305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피난민 목사를 포함한 가난한 외국인들, 목적지가 정해진 여행자들, 그리고 연수생들에게는 특별한 구호 혜택이 주어졌다. Nicolas Smiar, "Poor Law and Outdoor Poor Relief in Zürich, 1525-1529: A Case Study in Social Welfare History and Social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Ph. D. Diss., Univ. of Illinois at Chicago, 1986), 170-71. Wendel, *Always Among Us*, 150, 각주 84.

95) Wendel, *Always Among Us*, 191.

96) Wendel, *Always Among Us*, 192.

97) Wendel, *Always Among Us*, 193-94. 오피츠 (Peter Opitz)는 외텐바하 수도원 뿐만

가난한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3회(제 5, 14, 18항)에 걸쳐 규정한 것은 <구호법>에 규정된 구호 행위가 시의회의 공적 행위임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sup>98)</sup> 가난한 방문객들이나 순례자들이 취리히에 도착했을 때 이들에게 단지 식사와 하룻밤의 숙박편의가 제공되었을 따름인데 이런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곳은 제 18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취리히 시가 내곽인 아닌 외곽의 농촌지역이었다.<sup>99)</sup> 제 19항은 시의회의 구호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로 사망할 경우, 이들의 재산은 시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0항은 가난한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마지막 항인 제 21항은 구호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기부금을 이 법이 정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sup>100)</sup>

### 3. 츠빙글리의 기여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의 구호 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츠빙글리의 기여는 무엇인가? 츠빙글리 연구가 울리히 게블러(Ulrich Gäbler)는 이와

아니라 프레디저 수도원도 이런 목적을 위한 곳으로 전환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오피츠, 『울리히 츠빙글리』, 76. 웬델은 외젠바하에서 특히 천연두(smallpox)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밝힌다. Wendel, *Always Among Us*, 158. 환자 치료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한 자들은 수도원의 전환 이후에도 그 곳에 머물렀던 수녀들이었지만, 대부분의 젊은 수도자들은 수도원을 떠나 스스로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공업 관련 기술을 배워야 했다.

98) Wendel, *Always Among Us*, 190, 192, 194.

99) Wendel, *Always Among Us*, 194.

100) Wendel, *Always Among Us*, 194-95. 오피츠는 구호활동의 공적 성격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화, 수입과 이자 등이 등록되어야 했으며, 연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했다고 주장한다. 오피츠, 『울리히 츠빙글리』, 76.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제공한 바 있다.

쯔빙글리의 설교와 개혁활동은 쥘리히의 일반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요약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의회가 - 주교나 수도원과 같은 교회 기구들을 제거한 다음 - 사적 생활은 물론 사회적 생활의 큰 부분을 조정하고, 감독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증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뿐이다.<sup>101)</sup>

1520년의 <자선법>과는 달리 1525년의 <구호법>은 취리히 시의 구호활동이 공적이며 검소한 활동이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세속 정부의 구호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구호대상자들이 특정한 문양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이 공개되고 ‘알려진(known)’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sup>102)</sup> 취리히의 시민이 아니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이 구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호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sup>103)</sup> 구호의 대상에서 다른 현의 주민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거주지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걸인들은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자선이나 구호 행위가 베풀어졌는가? 시의회가 이런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기능은 개별 기부자나 교회에 의해 충족되도록 요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구호법>은 개별 기부자들에게 양심에 따라 자선을 베풀기를 독려한다.<sup>104)</sup> 이 점에 있어서 시 의회는 개인의 자선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법이

101) 게블러, 『쯔빙글리』, 110.

102) Wendel, *Always Among Us*, 149.

103) Wendel, *Always Among Us*, 192.

104) Wendel, *Always Among Us*, 192.

취리히의 종교개혁이 진행된 후에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츠빙글리의 자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구호법>의 후반부에는 개별 교회들이 이런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주어졌다.<sup>105)</sup>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스위스의 또 다른 중요한 도시 제네바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그가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상당한 숫자의 외국인이 이주해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고 기록한다.<sup>106)</sup> 그 이후 종교적 탄압을 이유로 제네바로 이주하는 가난한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했고 시의회가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마침내 1545년 6월 15일에 제네바 시의회는 모든 가난한 외국인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 놓고 이들에게 빵을 제공한 후, 이 도시로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sup>107)</sup> 이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 칼빈은 다빗 뷔장통 (David Busanton)이 유언으로 3,000 에쿠스라는 거금을 회사한 사실을 시의회에 알려왔고 이를 계기로 시 의회는 외국인에 대한 구호활동을 허락했고 이 위기는 극복될 수 있었다.<sup>108)</sup>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제네바의 경우, 뷔장통의 기부금이 세속정부가 관장하는 복지기관의 기금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프랑스 기금’ (Bourse française)이라는 사실 재단에 이 금액의 기부금이 주어졌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 피난민들을 포함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

취리히의 경우, 칼빈의 제네바처럼 가난한 외국인들이나 피난민들을 포함한 시민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실 재단이 설립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sup>109)</sup> 1523년의 1차 논쟁에 근거하여 수도원들이 폐지되었고,<sup>110)</sup> 그 결과 여러 수도원의 재산과 취리히의 대표적 교회인 그로스뮌스터 (Grossmünster)의 재산은 이 시의회에 귀속되었는데 이는 츠빙글리의 주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111)</sup> 이 재정의 상당한 부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sup>112)</sup> 그러나 시의회에 의해 제정된 <구호법>은 가난한 외국인들이 세속 정부의 구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 및 자선 행위는 시의회가 아니라 개인이나 교회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자선에 대한 츠빙글리의 부정적 견해는 국가의 구호활동 이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을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취리히 시 의회는 사실상 개별적 자선을 용인하는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자선에 대한 츠빙글리의 부정적 견해는 그의 종교개혁적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취리히 시 의회가 제정한 <구호법>을 통해서 완전히 현실화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105) Wendel, *Always Among Us*, 194.

106) CO 31, 30. 이상규, “칼빈과 구호활동,” 『칼빈과 사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0), 186.

107)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Selinsgrove, PA: Susquehanna Univ. Press, 1989), 34.

108) 제나인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윤천석 옮김, 『칼빈과 사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0), 164.

109) 개블러, 『쯔빙글리』, 110-11.

110) 츠빙글리는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 제 27조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패한 수도원을 떠나라고 강력하게 권면한다. HZWI, 321. 주도홍, 『처음 시작하는 루터와 츠빙글리』, 209-11.

111) 오피츠, 『율리히 츠빙글리』, 75.

112) Eak, No. 426. 오피츠, 『율리히 츠빙글리』, 75.

## VI. 마치면서

본 논문은 국가와 가난한 자들의 구호 활동에 대한 츠빙글리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삶의 갈등과 분열의 해결자로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국가의 기원이 생각될 수 있었다. 국가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사회 질서의 유지,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 하나님의 의 시행,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 세금 징수를 통하여 국가 공무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다섯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츠빙글리의 이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형상, 형제이자 공동체의 일원,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형상.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란 표현은 가난한 자들이 돌봄과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형제이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주장은 가난한 자도 서로 협력하고 일치와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란 표현은 반 우상 숭배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데 우상은 하나님의 거짓 또는 가짜 형상에 해당되며,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참된 형상이란 점을 대조적으로 드러낸다. 우상을 치장하는데 사용되었던 막대한 비용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시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츠빙글리는 자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표방했다. 이는 의심없이 선행에 해당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 칭의함을 받는다는 주장은 그리스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불경건의 극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구호행위는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측면에서 자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었다. 자선의 문제점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서서히 극복되기 시작했고 이는 자선이 구호행위로 변화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집중화, 평신도화, 합리화.

마지막으로 국가와 가난한 자들의 구호라는 단락에서는 취리히 시 의회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는가를 두 가지 법령, <자선법(1520)>과 <구호법(1525)>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정되었던 <자선법>의 경우 어떤 사람들이 이 법의 수혜 대상인가를 밝히는데 이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가난한 자들이었다. 또한 어떤 자들이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되 이들을 13가지로 분류하는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5년 뒤에 작성된 <구호법>은 국가의 구호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에 해당된다. 이 법은 시의회가 공적 구호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주도한다는 사실을 천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법에서 특이한 부분은 취리히 시가 가난한 자들을 구호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취리히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제한하고, 타 지역 주민들과 외국인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조치로 인해 개인에 의해 자선 행위가 용인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적 신학에 근거한 츠빙글리의 이에 대한 반대는 완전히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개블러, 올리히, 『쯔빙글리: 그의 생애와 사역』, 박종숙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 맥키, 엘시 N., 『개혁교회전통과 디아코니아』, 류태선 · 정병준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박찬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츠빙글리의 견해,” 『한국개혁신학』 65 (2020): 80-117.
- 솔, 한스, 『종교개혁과 정치』, 황정욱 옮김,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도서출판 다함, 2020.
- 안인섭, “츠빙글리 (Ulrich Zwingli, 1483-1531)의 사회윤리사상,” 『신학지남』 86/4 (2019): 165-91.
- 오퍼츠, 페터, 『올리히 츠빙글리: 개혁교회의 예언자, 이단자, 선구자』, 정미현 역, 서울: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7.
- 울슨, 제나인,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윤천석 옮김, 『칼빈과 사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0.
- 이상규, “칼빈과 구호활동,” 『칼빈과 사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0.
- 이신열, “츠빙글리의 신론,” 『종교개혁과 하나님』,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8.
- 이은선,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의 예술 이해: 성상파괴와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3 (2019): 165-211.
- \_\_\_\_\_. “츠빙글리의 『목자』에 나타난 목회윤리,” 강경립 외, 『한 권으로 읽는 츠빙글리의 신학』, 서울: 세움북스, 2019.
- 조용석, “츠빙글리와 교회: 사회적 영역으로의 통합,” 『신학사상』 156 (2012): 153-80.
- \_\_\_\_\_. “츠빙글리와 하나님 중심주의 (Theozentrik): 신성의 보존을 위한 교의학적 기획,” 『신학논단』 65 (2011): 233-53.
- 주도홍, 『처음 시작하는 루터와 츠빙글리: 팩트를 따라 여행하는 종교개혁의 두 거장 이야기』, 서울: 세움북스, 2019.
- 정미현,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츠빙글리 윤리의 현대적 적용,” 『기독교사회윤리』 31 (2015): 217-49.
- \_\_\_\_\_. “이미지와 성상 부정에 대한 츠빙글리 사상 다시보기,” 『한국조직신학논총』 43 (2015): 143-78.
- 최영재, “츠빙글리의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에 관하여,” 『장신논단』 49 (2017): 115-42.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 『츠빙글리 저작선집 1』, 임걸 옮김,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 킹던, 로버트, “칼빈의 집사직분 이해,” 이신열 옮김, 『칼빈과 사회』, 부산: 고신대학교개혁주의학술원, 2010.
- Anderson, Gary W., *Charity: The Place of the Poor in the Biblical Tradition*, New Haven/London: Yale Univ. Press, 2013.
- Bavinck, Herman, *De ethiek van Ulrich Zwingli*, Kampen: G. Ph. Zaalsman, 1880.
-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 Denzler, Alice, “Geschichte des Armenwesens in Kanton Zürich im 16. und 17. Jahrhundert,” *Zürcher volkswirtschaftliche Studien*, N. F., 7 (1920).
- Egli, Emil, *Aktensammlung zur Geschichte der Zürcher Reformation in den Jahren 1519-1533*, Zürich: 1879; reprint Aalen, 1973.
- Eire, Carlos M. N., *Against the Idols: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6.
- Farner, Alfred, *Die Lehre von Kirche und Staat bei Zwingli*,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19.
- George, Timothy,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TN: Broadman, 1988.



- Grabill, Stephen J., *Rediscovering the Natural Law in Reformed Theological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6.
- Kreutzer, Jakob, *Zwinglis Lehre von der Obrigkeit*, Stuttgart: Ferdinand Enke, 1909.
- Lavater, Hans Rudolf, "Regnum Christi etiam externum: Huldrych Zwinglis Brief vom Mai 1528 an Ambrosius Blarer in Konstanz", *Zwingliana* 15/5 (2010).
- Locher, Gottfried W., *Der Eigentumsbegriff als Problem der evangelischen Theologie*, Zürich: Zwingli Verlag, 1962.
- Luther, Martin, *Martin Luthers Werke*, 10III.
- Olson, Jeanine E.,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Selinsgrove, PA: Susquehanna Univ. Press, 1989.
- Schmid, Heinrich, *Zwinglis Lehre von der göttlichen und menschlichen Gerechtigkeit*, Zürich: Zwingli Verlag, 1959.
- Smiar, Nicolas, "Poor Law and Outdoor Poor Relief in Zürich, 1525-1529: A Case Study in Social Welfare History and Social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Ph. D. Diss., Univ. of Illinois at Chicago, 1986).
- Stephens, W. P., *The Theology of Huldrych Zwingli*, Oxford: Oxford Univ. Press, 1986.
- Tierney, Brian, *Medieval Poor Law: A Sketch of Canonical Theory and Its Application in England* (Berkeley, CA/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59).
- Walton, Robert C., *Zwingli's Theocracy*,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67.
- Wendel, Lee Palmer, *Always Among Us: Images of the Poor in Zwingli's Zuric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reprint, 2002.
- Wernle, Paul, *Der evangelische Glaube nach den Hauptschriften der Reformatoren, II. Zwingli*,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19.

- Wickelmann, Otto, "Über die ältesten Armenordnungen der Reformationszeit (1522-1525)," *Historische Vierteljahrschrift* 17 (1914-15).
- Zwingli, Huldreich, *Huldreich Zwinglis Werke*, hg. Melchior Schuler & Johannes Schulthess, Band I-III, Zürich: Friedrich Schulthess, 1828-32.
- Zwingli, Huldrych, *Zwinglis sämtliche Werke*, hg. Emil Egli, Georg Finsler und Walther Köhler, Band III, Leipzig: Heinsiu, 1914.